

보도자료



2020년 6월 2일(화) 배포 2020년 6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2일(화) 낮 12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담당과장: 송정원(02-2110-6120) 담당: 한윤숙 사무관(02-2110-6117)

다른 앱에서 더 싸게 못팔도록 …

최저가 보장제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총 4억 6,800만 원 부과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 18일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유)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임.

1 시장 구조·현황

- □ 배달앱은 소비자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배달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 음식점에게는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 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2017년말 기준 가입 배달 음식점 수: 40,118개)



□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매출액 순위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u> </u>						
구분	2015		2016		2017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배달의민족	49,517	55.0%	84,850	61.6%	162,565	64.5%
요기요	23,630	26.3%	36,508	26.5%	67,140	26.7%
배달통	16,819	18.7%	16,472	11.9%	22,053	8.8%
합 계	89,966	100%	137,830	100%	251,758	100%

* 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이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배달 음식 시장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순 이용자^{*} 수는 6,526만 명이다. ★순 이용자란 배달앱을 다운받아 1회 이상 실행한 소비자 의미함.

2 행위 사실

- □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에서보다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 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 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 □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 o 요기요는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 □ 요기요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 □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동안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 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 o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점검(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 o 요기요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배달 음식점에 **요기요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다.
 -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식점(43개)는 계약을 해지했다.

3 │ 위법성 판단·조치 내용

- □ (위법성 판단) 요기요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여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
 - o 요기요는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배달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
 - * 배달앱 이용에 있어 소비자는 배달 음식 주문 시 특정 배달앱만을 주로 이용하는 경향(Single-homing)이 있는 반면, 배달 음식점은 복수의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 (Multi-homing)을 보임.
 - 배달앱 이용자 중 1개의 배달앱만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 74.1%(요기요 설문 조사, 2014년), 82.2%(공정위 설문조사, 2018년)
 - 요기요 가맹 음식점 중 93.7%가 배달의민족에도 가입(요기요 설문조사, 2015년)

- 자신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 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항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 * 최저가 보장제 하에서는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의 앱 이용 수수료 인상 시 자신이 인상된 수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요기요 가격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의 판매 가격까지 모두 동일하게 인상해야 함.
-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경영 간섭)
- □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 원(잠정)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 하는 행위

4 │ 의의·기대 효과

□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일방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여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 국내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배달앱이 규모가 영세한 배달 음식점을 상대로 가격 결정 등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공정위는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